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510

제출년월일 : 2014. 11. 20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○ 「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여 보훈명예수당으로 변경, 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확대 지급하여

○ 국가를 위해 헌신·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하고 명예를 선양·고취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○ 국가보훈 관련 용어의 정리와 예우 및 지원대상 정의…(안 제2조,제3조)

○ 수당 등 지급신청부터 환수절차 까지 조문 신설…(안 제8부터 제13조까지)

○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서식 정비…(별지 제1호, 제2호 서식)

○ 이 조례의 개정 시행과 동시에 「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…(부칙 제2조)

☐ 개정 조례안 : 붙임

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☐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3조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, 제73조, 제102조의 2

○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5조

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조, 제2조

○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○ 「개인정보보호법 및 제15조, 전자정부법」 제38조

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장희정 2014-11-20 10:43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붙임

□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기간 : 2014. 9. 12. ~ 10. 2. 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○ 현행조례(전문) 2부.

○ 검토보고서 1부.

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장희정 2014-11-20 10:43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에 라목을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
4. "보훈단체"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장"을 "안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,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수당 등 지급)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보훈명예수당
   가. 참전유공자 : 월 5만원
   나.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: 월 3만원
2.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15만원

제9조(수당 등 지급대상) ① 보훈명예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.

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.

제10조(지급신청) ①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.

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지급 범위는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다.

④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지급대상자에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장희정 2014-11-20 10:43

제11조(지급결정 및 지급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,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신청계좌로 지급하되, 지급일이 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.

제12조(지급중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

제13조(환수조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
2. 거주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후 지급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이 조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복지정책과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과 박 용 덕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복지기획계장 이 규 석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장 희 정 (행정 2861)

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장희정 2014-11-20 10:43

〈별지 제1호서식〉

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

□ 참 전 □ 그 외 보훈대상자

처리기간
30일

신청인	성 명		지급대상유형 (보훈등록번호)	
	주민등록번호			
	주 소	(행정동 :)		
	전 입 일			
	연 락 처 (전화번호)			

예금계좌	예금주	은 행 명	계 좌 번 호

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안산시장 귀하

구비서류	신청인 제출서류	**담당 공무원 확인사항** (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)	
	1.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. (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증 등) 2. 본인 통장사본 1부.	1. 주민등록등본(거주기간 확인)	수수료 없 음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'**담당 공무원 확인사항**'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장희정 2014-11-20 10:44

<별지 제2호서식>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10일
참전유공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(행정동 :)		
	사망일자			
	지급대상유형(보훈번호)			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(전화번호 :)		
	참전유공자와의 관계			
	지급기관(예금계좌)			

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안산시장 귀하

구비서류	신청인 제출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(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)	수수료
	1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.	1. 주민등록등본(사망자 거주기간 확인)	없 음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'**담당 공무원 확인사항**'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장희정 2014-11-20 10:44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리) (생략) 1. (생략) 가. ~ 다. (생략) 〈신설〉 2. ~ 3. (생략) 〈신설〉	제2조(용어의 정리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 수행 2. ~ 3. (현행과 같음) 4. "보훈단체" 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.
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(이하 "보훈단체" 라 한다)로 한다.	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안산시(이하 "시" 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.
제5조(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 1. ~ 7. (생략)	제5조(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) 안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---------- -------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
〈신설〉	제8조(수당 등 지급)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1. 보훈명예수당 가. 참전유공자 : 월 5만원 나.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: 월 3만원 3.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15만원
〈신설〉	제9조(수당 등 지급대상) ① 보훈명예수당(이하 "수당" 이라 한다)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.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.

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장희정 2014-11-20 10:44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	제10조(지급신청) ①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.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지급 범위는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다. ④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지급대상자에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.
<신설>	제11조(지급결정 및 지급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,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신청계좌로 지급하되, 지급일이 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.
<신설>	제12조(지급중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 1.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

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장희정 2014-11-20 10:44

현 행	개 정 안
〈신설〉	제13조(환수조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1.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. 거주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.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후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.
제8조(민간의 참여여건 조성) (생략)	제14조(민간의 참여여건 조성) (현행과 같음)
제9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(생략)	제15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시행규칙) (생략)	제16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

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장희정 2014-11-20 10:44

현 행	개 정 안
〈신설〉	〈별지 제1호서식〉 **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** □ 참 전 □ 그 외 보훈대상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: 성명 / 지급대상유형(보훈등록번호) / 주민등록번호 / 주소 (행정동 :) / 전입일 / 연락처(전화번호) 예금계좌: 예금주 / 은행명 / 계좌번호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: 신청인 제출서류 — 1.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. (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증 등) 2. 본인 통장사본 1부.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(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) — 1. 주민등록등본(거주기간 확인) /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**'담당 공무원 확인사항'**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〈신설〉	〈별지 제2호서식〉 **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** 처리기간 10일 참전유공자: 성명 / 주민등록번호 / 주소 (행정동 :) / 사망일자 / 지급대상유형(보훈번호) 신청인: 성명 / 주민등록번호 / 주소 (전화번호 :) /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/ 지급기관(예금계좌)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: 신청인 제출서류 — 1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.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(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) — 1.주민등록등본(사망자 거주기간 확인) /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**'담당 공무원 확인사항'**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장희정 2014-11-20 10:44